

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7.23(화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물류산업과	담당자	·과장 김완국, 사무관 이양구 ·☎ (044) 201-4018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안전운임제는 화물시장의 과적·과속 근절을 위해 도입되었으며, 화주·운수사업자·차주간의 공정한 논의구조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.

-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저운임에 따른 과적·과속·과로 운행을 예방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의 심의·의결을 위해 ‘안전운임위원회’를 구성하여 올해 7월 3일 공식 위촉하였으며 현재까지 2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 - *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시행령에 따라, 공익 대표위원 4명, 화주 대표위원 3명,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명, 차주 대표위원 3명으로 구성(총 13명)
-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운임의 종류별로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가 달라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변화하는 구조입니다.



- 예를 들어, 안전위탁운임의 경우 운수사업자는 화주와 같이 운임의 지급 주체가 되어 차주와는 대립된 이해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, '안전운임위원회'의 구성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'기울어진 운동장'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한편, 안전운임 품목인 컨테이너,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주는 대부분 위·수탁 차주이며, 위·수탁 차주를 회원으로 하여 권익을 대변하는 전국적인 단체로서 화물연대가 유일하므로 화물연대의 추천을 받아 화주 대표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.
- 앞으로 '안전운임위원회'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안전운임을 산정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서울경제, 7.23(화).) >

- ◆ 이번엔 화물차 운임...또 기울어진 운동장(7.23)
 - 안전운임위원회가 노조 측에 유리하게 구성된 '기울어진 운동장'
- ◆ 시멘트 운반차주, 화물연대 가입률 10% 불과...대표성도 문제(7.23)
 - 차주 대표위원 3명이 모두 화물연대 소속으로 지입차주 대표성 미반영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이양구 사무관(☎ 044-201-40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